
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장중태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시험·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·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가 그 시험·검사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제3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